

漁港의 維持관리 ④

台帳을 整備 管理에 利用

1. 어항대장의 정비

어항관리자는 그 관리할 어항 별로 어항대장을 만들어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3)

어항시설은 종류가 많고 복잡하며 그 정비, 개수, 국부개량 등의 국가보조사업을 비롯하여 각종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도 매년 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어항형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매우 긴 세월과 많은 비용이 들며 장래에 걸쳐 항구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며 한편 그 관리에 대한 어항관리자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새로 실제관리를 담당할 사람은 단기간에 교체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어항대장을 정비하여 그 관리하는 시설의 경위, 현상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어항관리자가 스스로 조성한 시설이외에도 기부에 의해

서 취득한 것, 타의 공공단체 등에서 관리의 위탁을 받은 것, 공유수면매립에 있어 면허조건에 따라 어항관리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도 대장에 등재할 필요가 있다.

이외 어항대장은 본래의 목적외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외곽시설, 계류시설의 연장이 지방교부세의 산정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시 현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어항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항대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 (1) 어항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구역
- (2) 어항시설의 종류, 명칭, 소재지, 구조 및 규모능력
- (3) 어항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 (4) 어항시설의 건설 또는 취득년월일
- (5) 어항시설의 건설 또는 취득가격
- (6) 기타 어항의 유지관리상

이용료, 토사채취료 등의 근거규정, 징수자, 징수범위

구 분	어항시설의 이용대가 등	토사채취료·점용료 등
근 거 법 령	어항법 제 35조 어항법시행령 제 21조	어항법 제 39조의 3 어항법시행규칙 제 13조
조례·법규의 예	어항관리규정(조례)	토사채취료 등 징수규칙
징 수 자	어항관리자	어항관리자의 장
귀 속	어항관리자	어항관리자
징 수 범 위	어항관리자가 관리하는 어항시설 (수역시설 제외)	수면 또는 공공 공지

필요한 사항

어항대장의 양식 및 첨부할 도면은 농림수산대신의 고시로 정해지고 있으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때 어항대장에 기재함과 동시에 당해사항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어항대장 작성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어항대장의 양식 및 어항대장에 첨부할 도면을 정할 고시
- 어항법시행규칙 제 9조의 2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어항대장 및 여기에 첨부할 도면의 작성요령에 대하여
- 항만대장의 작성 등 사무 처리의 요령에 대하여

2. 토지의 출입 및 사용 등

어항관리자는 어항의 유지 관리에 필요가 있을 때는 5일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 수면에 출입 또는 일시 채료하치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이 어항법 제 41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있으나 이것은 농림수산대신이 어항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타인의 토지 또는 수면의 출입, 측량이나 검사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외 어항관리자는 비상재해 시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 있는 자를 복구, 위해방지에 협력토록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처분을 할 수가 있다.

- 필요한 토지, 수면, 선박 또는 공작물을 사용하는 것
 - 토석, 축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용하는 것
- 더욱 이러한 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고 또한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적정한 이용료 등의 징수

어항구역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요금 등은 어항관리규정에 따

라 어항관리자가 징수하는 것과 어항법 제 39조의 3에 의해서 어항관리자의 장이 징수하는 것과 들로 구분하고 있다.

(1) 어항관리자가 징수하는 이용의 댓가

어항관리자가 징수하는 이용의 댓가로서는 어항시설의 이용료·수수료·점용료 등과 이러한 것의 과태금 및 과료가 있다. 징수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어항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다만, 항로·박지 등의 수역시설점용료는 별도 어항법 제 39조 및 제 39조의 3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무로서 허가되어 점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다.

어항관리자가 이용의 댓가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근거가 되는 법규가 필요하나 어항법에서는 어항관리규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징수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요율에 대하여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과태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유처리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폐유처리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금의 정률 또는 정액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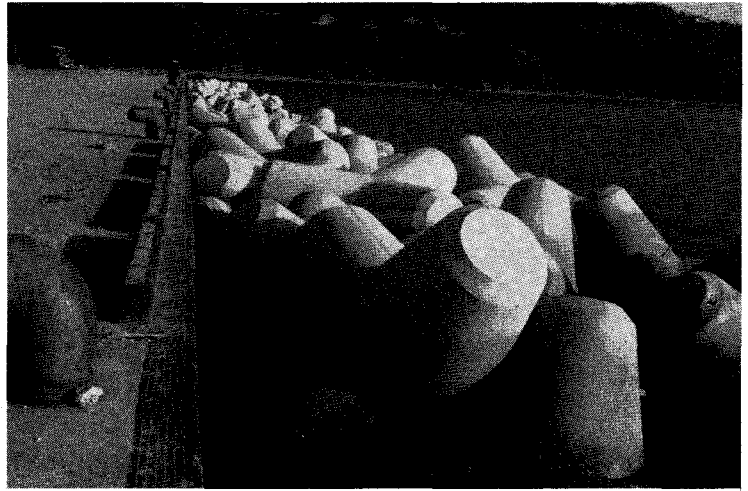
이용넷가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상과 같은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적합치 않으면 위법한 징수가 된다. 따라서 어항관리규정은 조례가 아니면 안되고 폐유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폐유처리 규정으로서의 내용을 구비하여야 한다.

더욱 이러한 이용의 넷가 등은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어항관리자의 장이 징수하는 토사채취료

어항관리자의 장은 어항법 제 39조의 1항 규정에 의해서 토사의 채취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사채취료 또는 점용료 및 그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都道府縣지사는 토사의 채취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한 때에는 속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어항관리자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어항법 제 39조제 4항의 규정에 대해서 혐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기관 등에서 징수할 수 없다.

또 어항법 제 39조의 3제 1항에서는 어항관리자 이외의 자가 그 권원(예 소유권·지상권 등)에 의



“

어항의
보전상 토사채취
또는 점용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나
토사채취료 또는
점용료의 징수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해서 관리하는 토지에 관한 수역에 대하여는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어항구역과 하천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하천의 수역내에는 예가 적으나 수면하의 토지가 사유인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어항의 보전상 토사채취 또는 점용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나 토사채취료 또는 점용료의 징수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더욱 하천법에서는 하천관리

자이외의 자가 그 권원에 따라 관리할 토지에 대한 요금의 징수뿐만 아니라 행위제한에 대하여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어항구역은 이외 해안보전구역 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법령에 따라 당해 구역의 관리자 등이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각각 중복되어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통달로서 다음과 같이 정해 놓고 있다.

① 어항구역과 하천구역이 중복되는 구역에 있어서 토지점용료 또는 토석채취료는 하천관리자만이 징수한다.

② 어항구역과 해안보전구역이 중복되는 구역의 공공공지에 있어서 점용료는 해안관리자만이 징수한다.

③ 어항구역과 항만구역이 중복되는 구역에는 토사채취료 또는 점용료는 항만관리자의 장만이 징수한다.

더욱이 허가 등에 있어서 각 법령에 따라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제외되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다.

토사채취료 등에 대하여는 어항시설의 이용대가 등도 다르고 어항관리자의 장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수역 또는 공공공지의 관리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어항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어항시설이 다르고 단체의 조례로서는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부터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나 어항관리자가 어항유지관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징수는 어항관리자의 장이 행하나 귀속은 어항관리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의 징수의 근거로서는 어항관리자의 장이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① 단독의 토사채취료 등 징수규칙을 정하거나 ② 이미 정하여진 장의 징수규칙에 포함해서 정할 수도 있고 ③ 어항관리조례의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으나 어떤 것에 의해서 정해도 관계는 없다고 본다. 더욱 그 기준에 있어서는 어항법시행규칙에서 토사채취 등의 목적 및 양태에 따라 타당한 것을 택하여 그 지방의 토지채취료 또는 지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조사연구·통계자료 등의 작성

어항관리자의 직책은 어항관리규정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 어항의 유지관리로 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어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작성을 행하는 것도 그 직책의 하나이다.

그 역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항의 정비계획 또는 유지운영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며 그 내용으로서는 당해 어항구역내에 있어서 어선의 실태, 어항의 이용상황, 수산물양륙상황, 유통가공판매의 실태, 어항구역의 인구, 어업경영체, 어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실태 등의 경제적, 사회적 조사연구 및 기상, 해상, 지형, 지질 등의 기술적 조사연구를 행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등을 행한다.

더욱 어항관리자가 작성하는 통계자료중 항세에 관계되는 것은 그 유효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행하고 그 결과를 수산청에서 취합하여 어항만세집을 편찬하여 각 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㉔

<다음호에 계속>

●●
**어항관리자가
작성하는 통계자료중
항세에 관계되는
것은
그 유효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행하고
그 결과를 수산청에서
취합하여
어항만세집을 편찬하여
각 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